

제 2011-BO-0152-1 호



안 전 인 증 서

(주)와이즈

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2022 (상갈동)

위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아래의 품목이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(안전인증) 및 시행규칙 제110조(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) 제4항(인증서 교부)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 결과 안전·보건 기준에 적합하므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인증합니다.

품 목

Temperature Indicating Switch

형식·모델/용량·등급/인증번호

형식·모델

인 증 번 호

T990*

11-AV2BO-0152X

용량·등급

Ex d IIB+H2 T6

정 격

$-20\text{ }^{\circ}\text{C} \leq T_a \leq +60\text{ }^{\circ}\text{C}$
정격: 인증조건 3항 참조(뒤쪽)

인 증 기 준

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(고용노동부고시 제2010-36호)

인 증 조 건

(뒤쪽)참조

2011.06.07. 최초발급

2022.06.09. 제조자명 변경((주)와이즈산전 → (주)와이즈)

2022년 06월 09일

한국 산업 안전 보건공단 이사장

